■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8. 5. 1.>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 ] 검인 [ ] 변경검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또는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해양 시설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설치위치	해양시설의 종류
	해양시설의 용도	
변경 내용	(변경 검인시에만 작성)	

「해양환경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변경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변경검인 시에는 변경된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1부	수수료 3,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사	→	결 재	→	검 인	→	발 급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경찰서

210㎜×297㎜(백상지 80g/㎡)